



•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기념 포럼** •

통합돌봄 시대,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대



2025.12.04(목) 14:00~17:00 | 홀트아동복지회 6층 강당





•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기념 포럼** •

통합돌봄 시대,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대



2025.12.04(목) 14:00~17:00 | 홀트아동복지회 6층 강당



I 인사말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는 설립자 해리 홀트·버다 홀트 부부의 신념으로 세워진 홀트아동복지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과 가족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이는 많은 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동행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오늘의 복지사업 전반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전국 지부와 산하시설이 함께 위기가정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장애인, 지역주민, 해외 취약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은 변화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게 합니다.

오늘 열리는 ‘창립 70주년 기념 포럼’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시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과제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통합돌봄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전문성과 지역 기반을 갖춘 민간 기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7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욱 나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경오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신미숙

•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기념 포럼 •

통합돌봄 시대,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대

-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14:00~17:00
- 장소 | 홀트아동복지회 6층 강당
- 주최 |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사회복지연구소

시 간	내 용	
14:00~14:20 (20')	개회식	• 개회사 :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 축 사 :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14:20~14:50 (30')	기조강연	• 통합돌봄 정책과 민간 사회복지의 미래 -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위원)
14:50~15:40 (50')	주제발표	• 돌봄통합 정책 환경 변화와 홀트 사회복지사업의 중장기 방향 모색 - 허수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40~16:00 (20')	휴식 및 네트워킹	
16:00~16:50 (50')	지정토론	좌 장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학부 교수)
		토론1 전영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책임)
		토론2 조은비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정책팀 주무관)
		토론3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4 황성진 (홀트아동복지회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16:50~17:00 (10')	종합 토론 및 폐회	

※ 행사 당일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 기초강연

- 통합돌봄 정책과 민간 사회복지의 미래 ————— 1
|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위원)

▶ 주제발표

- 돌봄통합 정책 환경 변화와 홀트 사회복지사업의 중장기 방향 모색 ————— 19
| 허수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정토론

- 토론1.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과 홀트아동복지회의 역할 ————— 41
| 전영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책임)
- 토론2.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민간 사회복지와의 협력 ————— 51
| 조은비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정책팀 주무관)
- 토론3. 돌봄통합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홀트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성원하며 ————— 59
|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토론4. 장애인 기관에서 바라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성공을 위한
5가지 체크 포인트 ————— 65
| 황성진 (홀트아동복지회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기조강연

통합돌봄 정책과 민간 사회복지의 미래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위원

통합돌봄정책과 민간 사회복지의 미래

2025. 12. 4(목) 홀트아동복지회 기조강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

1

목 차

- I. 통합돌봄정책의 의의
- II. 통합돌봄정책의 주요 열개
- III. 통합돌봄정책, 현실 진단 관점
- IV. 통합돌봄, 민간 사회복지의 역할
- V. 마무리: 미래, 그 너머를 바라보며

2

1. 통합돌봄정책의 의의

3

1 통합돌봄정책 추진경과와 향후 전개

그간의 경과

- 선도사업(19~22) 모형개발
- 시범사업(23~25) 본사업준비
- 돌봄통합지원법 제정(24.3)
- 시행령 입법예고(25.7)

최근 상황

- 국정과제 78번에 반영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 개최(25.9)
- 단계적 적용확대
 - 장애인(’ 26), 정신질환(’ 28)

향후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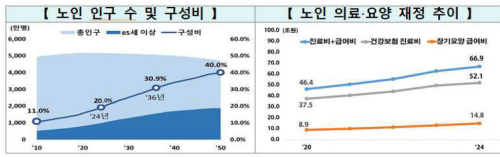
- 법 시행(26.3)
- 지자체 추진준비
 - 조직, 조례 마련
 -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

4

2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 왜 하는가?

1 검토 배경

- ① 급속한 초고령화(24.12월 초고령사회)로 돌봄수요 증가하나, 서비스 부족 +분절적 제공으로 체감도 하락→불필요한 입원·입소 등 왜곡 발생
 - * 노인 입원·입소인원: '24년 53만명 (요양병원 26만명, 요양시설 27만명)
- ② 의료·요양 재정 급증에 따른 지속가능성 저하
 - * 노인 재정: *건보 (20)37.5→(24)52.1조원(39% ↑) *장기요양 (20)8.9→(24)14.8조원(66% ↑)
- ③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노인·장애인의 AIP(Aging In Place) 욕구* 충족 필요
 - * 살던 곳 거주희망(87.2%), 건강 약화에도 살던 곳 거주희망(48.9%) <23. 노인실태조사>
 - * 연령과 장애 특성에 따른 복합욕구에 맞는 서비스 통합지원 필요 <23 장애인실태조사>



<정부의 논리>

- 의료·요양의 재정 급증
- 재가비용 증가속도 < 시설비용 증가속도

<새롭게 접근해야>

- 비용절감보다는 [재정투자 방향 선회] 초점
- (기존사업 재조정) 사각지대 해소, 시행착오 비용, 필요한 새로운 사업발굴
- 20-30년은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5

3 역사적인 관점: 보건복지 협력 - 지금이 절호의 찬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문 참조

김진우. 2024. <장애인정책에서의 보건·복지 협력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64, 151-18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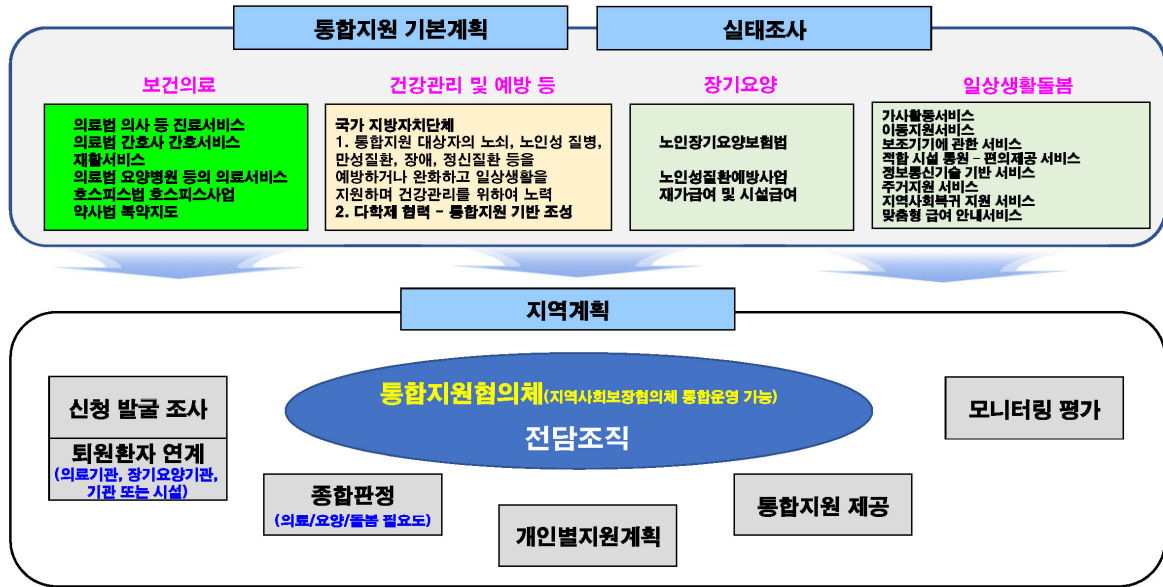


모든 것이 맞물려 있어, 상호 영향을 주는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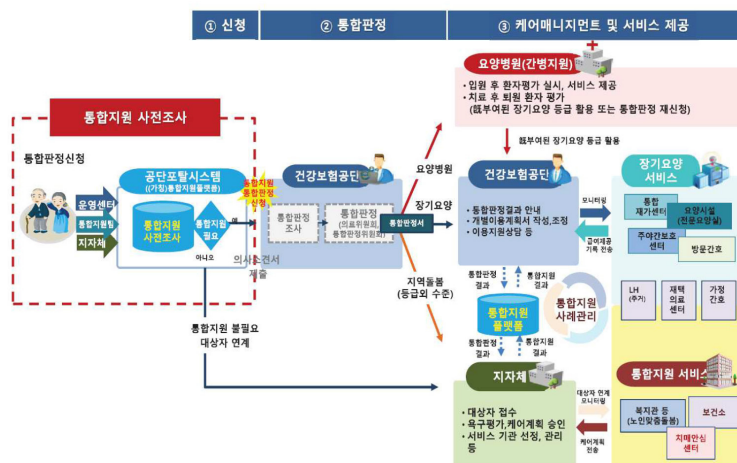
- 간이 안 좋아 눈이 나쁜데 - 눈만 치료한다?
- 보건의료, 건강관리, 영양, 일상생활돌봄
 - 모두 균형있게 발전해야
- 민관협력도 마찬가지
 - 통합돌봄정책,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

II. 통합돌봄정책의 주요 일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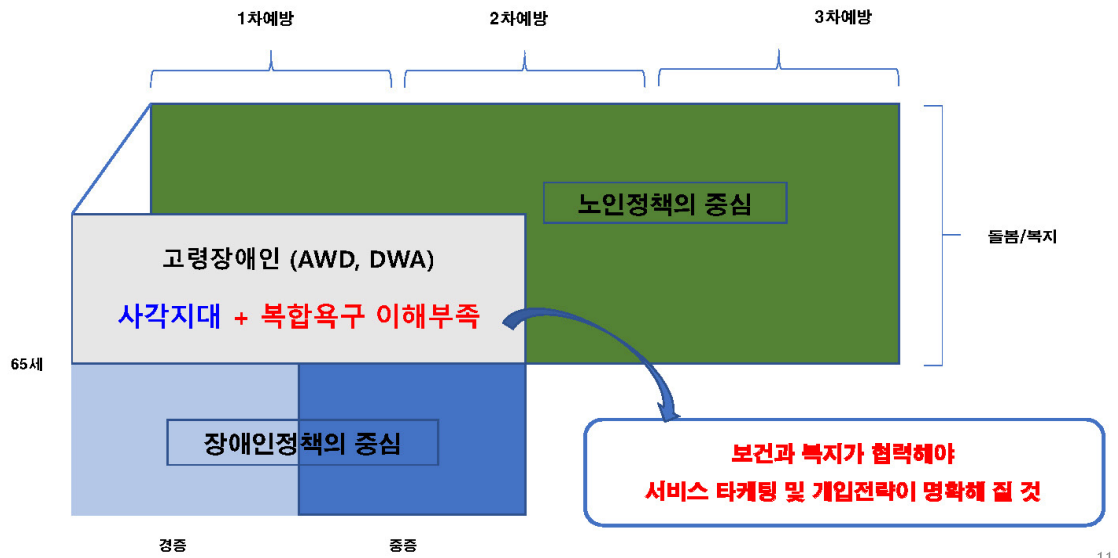
1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 열거



2 통합돌봄의 작동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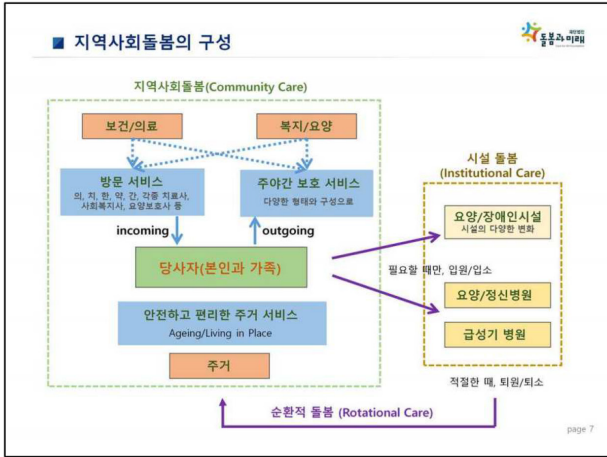
사전조사 때
 장기요양 수급신청
 장기요양 수급 잠재군은
 통합판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상쇄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III. 통합돌봄정책, 현실 진단 관점

1

통합돌봄에의 사각지대 확인 – 정책확장의 좌표 인식



출처: 지역사회돌봄: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용익(2024)

❖ 어디가 비어 있는지 확인

- 장애분야에서는 요양 기능이 부재한 상태
- 각 서비스에서 요건 미충족 사각지대 존재

❖ 순환적 사고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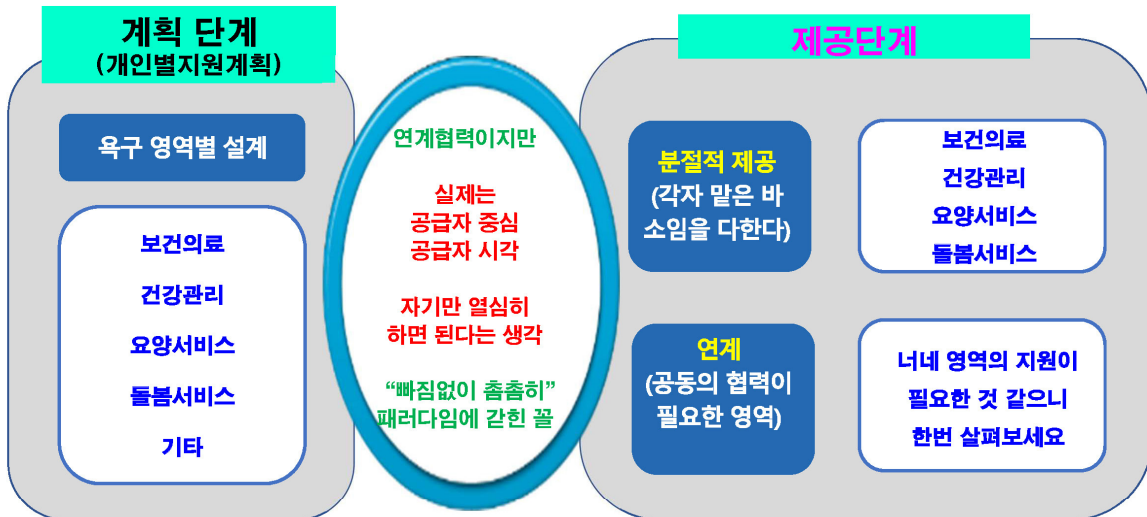
- 시설서비스도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축 담당



민간 역할의 중요성 확인

2

작동방식의 한계에 대한 통찰 : “빠춤패” 밧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



입법예고
(25. 6월 11일
~ 7월 21일)

- ✓ 전문기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 ✓ 시군구청장은 종합편정을 위해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게 위탁가능
- ✓ **통합지원회의**: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
- ✓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전문인력 양성 교육 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지방공무원,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인력양성 - 시도시자 위임가능)

민간기관에 대한 인식

정부, 공공기관이 결정하면 이를 민간에게 집행하게 하는 체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기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라고 푸념
민간은?

IV. 통합돌봄, 민간 사회복지의 역할

1

정부: 민간 사회복지의 역할 보다 적극적으로 명시해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민간의 역할, 혁신적인 협력방식 포섭 필요**

있는 것을 조율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메우려는 노력이 핵심**

다양한 욕구를 포섭하는 **사업내용의 다각화, 개별적 욕구에 충실할 수 있는 개별화 초점**

선의의 협력에 기댈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화 또는 예산 및 인력 지원

1-1

돌봄 등 복지분야 총괄 및 보건의료와의 소통창구 기능수행



18

1-2 민관 협력 : 역할의 포지셔닝 변화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과천시청

현황: 파견가서, 행복이음 / 희망이음 같이 보면서 민관 협력 및 역할 분담 - 지원계획 수립

제언: 복지관에 통합돌봄에서 돌봄 및 복지 총괄 기능 부여 필요

2 민간: 기존의 다양한 역할 모델 공론화 필요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 주도 돌봄모델 구축 사례

지자체 (사회복지관)	내용	특성
구로구 구로형돌봄모델 (회원,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관-구청 연합 주민돌봄활동가 양성 노맞돌, 장기요양, 돌봄SOS센터 대기주민, 공적돌봄 제외 주민 복지공백 해소 주민돌봄활동가가 방문해 이웃관계기반 정서지원, 급식, 세탁, 동행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활동가 양성, 이웃관계 기반 돌봄 * 조례제정, 재원확보
노원구 돌봄모델 (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단지 주민조직화로 돌봄대상 휴일, 사각시간 보호기능, 일상생활돌봄, 가구 단위 접근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단지 복지관이용주민이 돌봄공급주체로 전환
중랑구 중랑건강공동체 (면목외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돌봄활동가 양성, 어르신 건강소모임 운영 재택의료플랫폼, 방문건강서비스 등 의료기관 협력 건강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 행정기관협력:복지, 의료, 마을, 요양 * 조례제정
서울시 돌봄특화 공모사업 시행 (강남구, 성북구, 송파구, 강북구,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특화 사업 시범 추진 신체돌봄, 건강돌봄, 마음돌봄, 일상 돌봄 등 주민들의 돌봄욕구에 따른 돌봄생태계 조성 돌봄서비스 이용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돌봄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 마천, 번오마을, 생명의 전화, 중림 5개 사회복지관 사업참여

❖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오딘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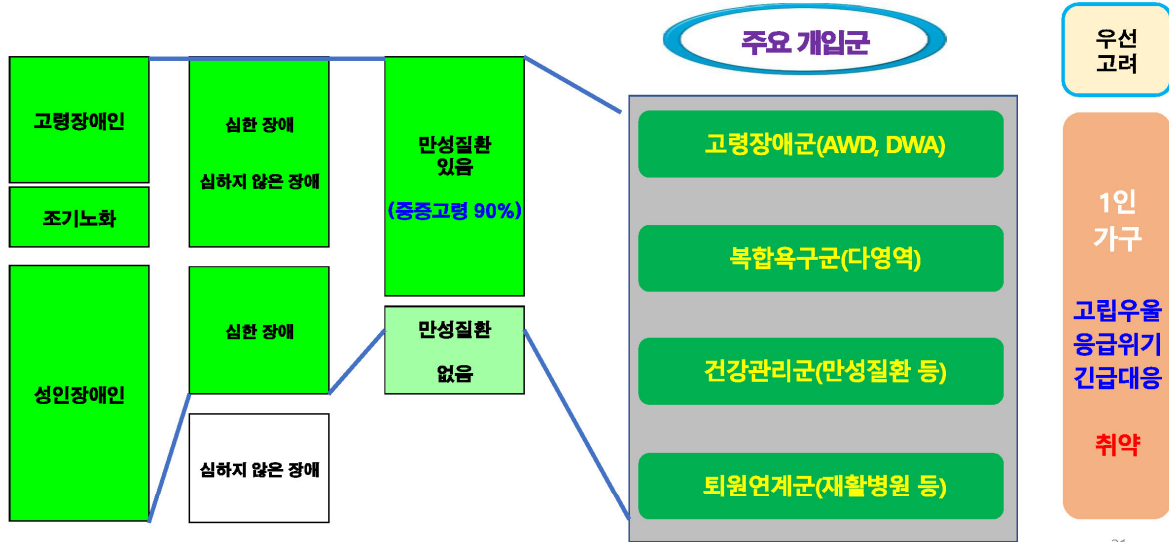
-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노인맞출돌봄서비스 등
- 장애인복지관: 다양한 부대사업
- 여러가지 바우처 사업 등

❖ 그러면 뭐가 문제냐? - 인식의 문제

- 통합돌봄이 “연계” 에 매몰되고,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라는 관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책 실패

출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토론회(2025. 10. 16)
서울시사회복지관 협회 토론회자료(김연은, 2025)

3 주요 개입군 타케팅 전략



21

예시 재활병원 입원, 그 이후 : 재활병원 - 집 -요양병원 -사망

A씨는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6개월간 K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과 더불어 뇌병변장애로 등록되었다.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였지만 외래를 예약하고 집으로 갔다.
 하지만 활동지원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K 재활병원 외래는 3개월마다 한번씩이고 지역사회에는 돌봄과 재활, 요양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곳은 없었다.
 가족들은 건디기 힘들었고, 할 수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갑자기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적절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기가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결국...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이런 사람에 대해 어떤 변화가 찾아오나?

22



참고

일본의 생활개호 (물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개호도 있음)

의의	<p>장애인의 주간 시간대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것 외에 운동, 재활, 생산, 창작 활동 등을 지원하는 봉사 시설</p> <p>장애지원구분(区分)이 '구분 3'(입소자는 '구분 4')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 필요한 간병을 받으면서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이나 재활에 힘쓰거나 생산·창작활동에 몰두하며 낮 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장</p> <p>장애인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낮에 제공하는 케어부터 자택이나 그룹홈에서 통원하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이 존재하며 활동 내용도 다양</p>
인력지원	生活支援員 医師 看護師 理学療法士(PT) 作業療法士(OT)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의 간호: 식사·목욕·배설의 보조, 의료적 케어(경관영양, 기관절개부 관리, 인공호흡기 관리, 복약지도 등) ❖ 생산·창작적 활동: 빵·제과 제조·판매, 재택근무, 목공 제작, 회화, 도예, 음악 감상 등 ❖ 건강 유지·증진 지원: 산책 등 가벼운 운동, 재활 등
참고사항	2018년 4월에 '공생형 서비스'가 창설되어 65세 이상의 이용자가 계속해서 같은 사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생형 생활 개호 사업 실시 가능

다기능화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업무 수행(다기능화)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일정 수준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협력공동체 구축 (지역주민 참여)

3중 복지관협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농산어촌 지역에 다기능화 예산 적극 편성하도록 건의

25

V. 마무리: 미래, 그 너머를 바라보며

26

1

전국민 통합돌봄 추진 - 다양한 민간 역할 확충은 정책발전의 토대

- △가족돌봄자 지원
- △치매 및 인지장애 돌봄
- △장애인 돌봄과 발달장애 자녀 돌봄
- △암환자·중증질환자 돌봄
- △생애 말기 돌봄(호스피스 등)
- △재가 돌봄
- △정신장애 돌봄
- △의료-간병 통합 시스템
- △지역사회·이웃기반 돌봄
- △청년 돌봄



논의
사회적 공감대

법제화
전국민통합돌봄법

돌봄산업화
다양화

2

늘 Golden Key는 현장, 민간에게 있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목소리를 내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한다.

세계선도국가, 복지 선진화는 민간의 창의성과 손끝에서 시작된다.

지금은 그들의 현재를 위해 일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의 미래다.

그 미래를 꿈꾸는데 홀트아동복지회가 함께 하길 기대한다.

28



감사합니다.

29

주제발표

돌봄통합 정책
환경 변화와
홀트 사회복지사업의
중장기 방향 모색

허수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돌봄통합 정책 환경 변화와 홀트 사회복지사업의 중장기 방향 모색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허수연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향
:돌봄 복지국가 (caring state)

1



“인류 문명의 첫 징조는 무엇이라 보는가?”

“부러졌다가 나온 대퇴골(大腿骨)이다”

-문화인류학자 Margaret Mead(1901~1978)



3

■ 2차 대전 후 복지국가

-기본전제: 남성의 유급노동 +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으로 구성된 가족

-‘일자리’와 ‘빈곤’위험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중심의 개입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실패

4

■ **돌봄에 대한 재조명: feminism에서 시작된 돌봄 윤리**

Carol Gilligan(1982)

- 새로운 돌봄윤리: 책임, 관계성, 응답성, 맥락성 중심의 도덕에 기초
- 돌봄윤리는 인간의 관계에 기초한 도덕(규범)이론

Gilligan(1982)

- 기존 복지에서 인간다운 삶: 최소한의 재화가 보장되는 제도
- 새로운 돌봄윤리에서 인간다운 삶: 서로를 보살피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와 **관계**에 기초

5

Kittay(2001)

- 복지**란 빈곤을 제거하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공적 가치를 가지는 **돌봄 및 돌봄관계를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

Nussbaum(2002)

- 돌봄은 필수적인 **기본재화**(primary goods)

Held(2007)

- 인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취약성을 지닌 존재
-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 생을 이어왔으며, 때로 누군가의 돌봄에 전적 의존
- 인간다운 삶은 **돌봄이라는 관계를 통해 유지되고 호전되며 성장**

6

김희강(2018)

-돌봄을 받는다는 의존성은 극복해야 하거나 특수한 비정상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정상성

홍찬숙(2020)

-기존 복지체제는 자원과 재화의 재분배에 주력하면서 돌봄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하였기에 돌봄의 보편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 필요

7

돌봄 복지국가의 목적과 방향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가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우리 모두가 속한 돌봄관계망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돌봄을 보편적 가치와 사회적 욕구로서 이해

8

돌봄의 재조명

-돌봄은 **사람을 통한 실천**에 주목

-돌봄의 실현은 같은 공간에서 시간, 시선, 교감을 함께 나누며

인간다운 관계를 키우고 지켜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짐**

-누군가의 취약성에 응답할 수 있는 공간적 거리에서 동시간대에 맞춰

누군가의 에너지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도덕적 실천**

9

돌봄에 대한 한국사회의 제도적 대응 (김용득, 2016)

1) 1970년대와 1980년대

: 수용시설 또는 생활시설 중심의 확대

2) 1980년대 후반기와 1990년대

: 이용시설 또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확대

3) 2000년대 이후

: 이용자 선택 방식의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확대

10

한국 사회서비스의 특징 (김용득, 2018; 김경란·김재연, 2022)

- 1) 빠른 사회서비스 확대 및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
- 2) 급속한 변화의 과정에서 각 단계의 서비스 모델 혼재
- 3) 여전히 부족한 돌봄 서비스
- 4) 대상에 따라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서비스
- 5)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 6) 선별주의의 한계

11

영국의 community care

2

1990년 Community Care Act 제정

-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에 사회서비스 제공 책임 이양
- 가족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 18세 이상의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 등을 포괄하는 제도
- 아동은 별도의 아동서비스국(Children's Services Department)에서 담당
- 서비스의 신청은 공공에서 받고, 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민간이 하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구조
- 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을 결정하고 운영을 평가하는 **품질관리제도** 포괄
- 돌봄** 서비스를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자는 방향성

13

2000년 돌봄표준법(Care Standard Act 2000)

- 개인예산제 도입
-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위해 국가서비스기준 마련
- 서비스의 진입을 **예방**하는 목적의 단기회복 서비스 제공

2002년 NCSC(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 도입

- 보건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포함하여 아동과 성인 대상 **서비스의 품질관리**

2014년 돌봄법(Care Act)

- 돌봄제공자 보호** 조항 강화
- 돌봄을 제공하는 비공식보호자도 자신이 돌보는 사람과 유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획득

14

영국의 지역기반 아동서비스

(양소남, 2012)



3

2004년 아동법 전면 개정

- 아동서비스의 통합과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
- 지방정부에 아동발달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 부과
- 지방정부의 아동서비스국(Children's Services Department)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재정비
-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의 욕구에 맞는 전문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나아가 지역사회보호를 강조
- 특히 **요보호아동**에 대한 **조기지원**과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조직들의 **민관 파트너십** 강조

2003년 Every Child Matters(HMSO, 2003)

-아동복지의 다섯 가지 지표

:건강, 안전, 즐거움과 성취, 긍정적 기여(참여), 경제적 안녕

-보편주의 표방

:어떤 아동이라도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한 시점에서 위기로 인해

취약해 질 수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방 우선

:문제가 만성적이 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여 조기개입을 통해 해결

-아동의 욕구수준에 따른 서비스 조직화

:취약아동, 요보호아동, 보호시스템에 있는 아동, 피학대아동 등으로 범주화

17

2008년 유아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예방조치의 강화

-아동이 아동기와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위기라 할 수 있는 문제

(교육적 미성취, 실업, 범죄, 반사회적 행동 등)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개입

아동중심 사례관리의 원칙

-아동 복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며 아동이 의견을 표현할 권리 존중

-어떠한 위험에 처한 아동이라도 정상적인 발달상태를 성취할 기반 제공

-아동이 가족에 의해 양육될 때 가장 이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다고 전제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가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개입

-변화하는 아동의 욕구에 끊임없이 부응하며 통합서비스 제공 및 조정

18

한국의 돌봄통합정책

4



돌봄통합서비스 제공 시도들

:급속한 고령화,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서비스 사각지대 등의 문제들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구축과 통합사례관리 확대

-2013년 맞춤형복지전달체계로의 개편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4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시범사업

-2015년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와 동 주민센터 기능 개편

-2017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재개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범

-2018년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돌봄욕구를 3단계(긴급돌봄, 일반돌봄, 일상편의)로 구분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안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안)' 발표

"케어(care)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케어는 돌봄뿐 아니라 주거, 복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의 개념"(보건복지부, 2018)

그간 분리되어 각기 다른 법, 재정 및 제도에 기반하는 주거지원, 보건의료, 돌봄, 생활지원을 새롭게 엮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

21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통합돌봄 대상자를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포괄
시범사업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포함

1차(2019-2020년) 선도사업

노인 5개 지자체(광주서구, 경기부천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경남김해시),
장애인 2개 지자체(대구남구, 제주제주시),
정신질환자 1개 지자체(경기화성시) 선정

22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통합돌봄 대상자를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포괄

시범사업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포함

1차(2019-2020년) 선도사업

- 노인 5개 지자체(광주서구, 경기부천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경남김해시),
장애인 2개 지자체(대구남구, 제주제주시),
정신질환자 1개 지자체(경기화성시) 선정
- 9월 2차 선도사업 추가(부산진구, 부산북구, 안산시, 남양주시, 순천시,
서귀포시, 충남 청양군, 충북 진천군)
- 16개 지자체에서 실시한 선도사업에 국비 95억3,200만원 사용

23

2020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발표

-주거지원 인프라 구축(탈시설화),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 서비스 구축,
다양한 복지 돌봄 서비스 구축(민간협업) 제안

2차 선도사업(2020-2021년)

- 대상자 유형: 장기입원자 지역복귀군, 만성질환자 관리군, 등외자 돌봄군,
퇴원하는 이행기군
- 사업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
- 국비 177억 6,400만원 사용

24

3차 선도사업(2021-2022년)

- 중증화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퇴원환자, 그 외 지자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
- 다른 대상자(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보다 노인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복지부 사업 지향성 전환
- 국비 181억 8,800만원 사용
 -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논의와 시범사업 정책 축소

◆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제정

25

돌봄통합지원법 및 선도사업의 한계 (장봉석 외, 2025)

- 공공인프라와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
- 전담조직 설치와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임의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족과 지역간 격차
- 여전히 보건·복지·주거·고용 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분절
- 정량적 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 주거 기반 인프라 부족
-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부족
- 돌봄 제공자의 처우개선 문제
-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통합 서비스 부재
- 아동과 장애인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모두를 포괄하지 못함

26

돌봄통합정책으로의 변화와 홀트의 방향

5



향후 한국사회에서 돌봄통합 정책의 확대는 필연적 진행

홀트가 선도할 수 있는,

홀트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홀트의 새로운 시그니처가 될 사업은 무엇인가?

현 돌봄통합서비스 체계에서의 역할 : 1) 현 홀트사업과의 연결 및 초점화

1) 홀트만의 서비스 대상의 초점화

: '장애를 가진 노인' 또는 '고령 입양인' 등 현 홀트 사업대상자 중 돌봄통합서비스 체계에서 대상자 초점화하여 구별된 서비스 지원

2) 돌봄통합 지원시스템에서 민관 협력 및 연계네트워크 강화

: 민관협력의 핵심거버넌스인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민간허브기관(local care hub)으로 역할

29

현 돌봄통합서비스 체계에서의 역할 : 2) 장애아동가족 돌봄통합서비스 제공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 돌봄통합지원법 대상 단계적 확대(노인 → 장애인·정신질환자)
→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
(돌봄·자립·건강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자립지원, 소득·근로·이동 등 권리 기반 강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돌봄)
- 홀트 사업진단(노총래 외, 2024)
→ 일산복지타운을 활용 연계하여 장애아동 교육, 돌봄, 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 제안

30

- **장애아동가족 돌봄통합서비스의 방향**

- 1) **현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문제**

- 서비스체계 간의 비연계성 문제

-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다양한 통합 돌봄서비스 부재 등

- 2) **홀트의 장애아동가족 대상 돌봄통합서비스**

- 아동의 생애단계와 가족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지역기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충분한 서비스를 최대한 보편적으로 제공

-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ADHD 및 경계선지능 아동가족 대상 서비스

- 교육·보건·복지 연계 통합케어 체계 구축(학교-병원-복지기관 연계)

- 서비스 과정과 결정에 장애아동과 가족의 참여

- 돌봄제공자의 양질의 근무환경 제공 (돌봄의 가치 선도)

31

- **현 돌봄통합서비스 체계에서의 역할 : 3) 가족돌봄자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 청. 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 마음건강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강화

- **가족돌봄자(Family Caregiver) 통합지원서비스의 방향**

- 1) **현 가족돌봄청(소)년 일상돌봄서비스의 문제**

-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

- 불충분한 서비스의 양

- 돌봄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부족

- 가족돌봄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 청(소)년으로 대상 한계

32

2) 홀트의 가족돌봄자 통합지원서비스

-지역사회 돌봄통합 모델과의 연계성

→ 돌봄대상자뿐 아니라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까지 포괄하는 통합모델

-돌봄 부담을 짊어진 다양한 가족 구성원(장애아동 부모, 노부모를 돌보는 성인자녀, 가족돌봄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서비스

-현 돌봄통합서비스 체계 및 학교 등에서 대상자 적극 발굴

-가족돌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통합제공

(심리상담, 소진예방, 멘토링, 대체돌봄, 긴급돌봄, 휴식지원, 교육(장애이해, 돌봄기술, 위기대처, 가족 내 의사소통 등), 자조모임, 학업중단 예방, 지역자원 연계 등)

향후 돌봄통합서비스 확대에서의 역할: 1) 아동가족 돌봄통합서비스 사업

•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 아동보호 강화(국가책임 입양체계·공공후견제 도입, 아동학대 대응체계·전문기관 확충, 원가정 복귀 지원)

→ 취약·위기 아동·청년 지원 강화

• 홀트 사업진단(노총래 외, 2024)

→ 내부에서 아동·청소년사업을 집중해야 한다고 공통 응답

→ 아동의 생애주기별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한부모, 미혼모, 저소득위기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한 통합사례관리 모델 구축을 제안

홀트의 아동가족 돌봄통합서비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가족형 통합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중심 돌봄'에서 '가족역량 강화 중심 통합돌봄'으로

→ 가족단위 욕구사정, 지역자원연계, 가족 역량 강화

-아동의 생애주기와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중심 통합지원

→ 보편적 서비스: 교육·보육·돌봄 및 가정내돌봄을 지원하는 양육지원,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부모교육

→ 특수 서비스: 유기/학대로부터의 보호와 치료, 경계선아동,

장애(위험)아동 조기발견 및 개입, 한부모·빈곤·조손·비혼부모
가정 등 위기취약가족의 아동과 양육자 지원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예방과 조기개입

35

▪ 가족중심 통합모델 사례:Manchester: 'Think Family' 모델

• 핵심개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발생한 돌봄·보호 문제를
가족 전체의 문제로 접근하는 통합 서비스

• 성인사회복지와 아동사회복지를 하나의 케이스워크팀으로 운영

• 사례관리자는 가족단위(family unit)로 needs assessment

•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상담사, 주거지원 담당자가
공동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 성과: 자녀의 학교결석률 감소, 부모의 서비스 중복 이용 감소,
가족기능회복률 개선

36

향후 돌봄통합서비스 확대에서의 역할: 2) 준자립 커뮤니티 하우스 사업

- 영국의 준자립 주거(Semi-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이상정, 2025)
 - 아동보호에서의 탈시설화 (영국 가정외보호아동 중 시설아동은 1%)
 - 만 16세 이상의 가정외보호 청소년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독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과도기적 주거 형태
 - 식사 준비, 개인위생 및 세탁, 주거 공간 청소, 생활비 관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자립 기술을 직접 경험
 - 운영 기관은 대상자에게 사례관리서비스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적 지원(상담, 진로지원, 위기개입)을 함께 제공

37

홀트의 준자립 커뮤니티 하우스 사업

- 아동보호에서의 탈시설화 준비
- 보호종료 아동 대상 준자립 커뮤니티 하우스 사업
- 공공의 통합적 보호와 개인의 자기주도적 자립 준비가 동시에 실현
- 자립준비청년이 수동적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 자립계획 수립, 생활관리, 규칙 준수, 자기결정과 책임수행 등의 과정에서 주체적 참여자로 활동
-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율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 사례관리, 주거, 심리상담, 생활교육, 진로서비스, 멘토링 등 통합 제공
- 지역 기업 및 대학과 연계한 직업훈련과 사회참여 지원

38

새로운 돌봄통합 관련 사업의 기대효과

- 1) 입양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보여줌
- 2) 가족 중심 돌봄을 지향함으로 사회적 신뢰 제고와 브랜드 리빌딩
: '가족을 지켜주고', '가족의 회복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
- 3) 정부 돌봄통합 정책방향과 맞물리는 전략적 포지션 구축
: 향후 장애인과 아동 및 가족돌봄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 예상
- 4) 한국사회의 돌봄윤리를 실현하고 선도
: 돌봄의 보편성을 지향하고, 이용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문제를 예방 및 조기개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돌봄 일자리를 제공

39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허수연
syeonh@hanyang.ac.kr

40

지정토론 1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과 홀트아동복지회의 역할

전영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책임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과 홀트아동복지회의 역할



| 지역사회 통합돌봄(또는 돌봄통합) 정책 현황

법적 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6.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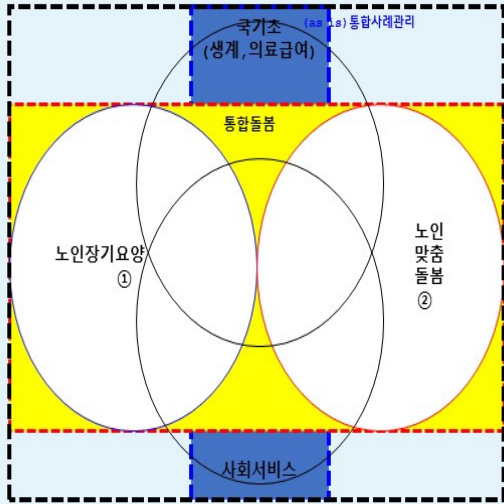
구분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제2조(정의) 수급권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지원대상자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제2조(정의)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업무프로세스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제16조(수급권자 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제12조(종합판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전달체계(전담조직)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전달체계(인력)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42조의2제2항 통합사례관리사	X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Or care management)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지원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X
정보시스템	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지역사회 통합돌봄(또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현황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19년~'22년)

-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계고 및 독립성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을 목표로 선도사업 실시
- 2019년 6월부터 16개 지자체에 순차적으로 선도사업 실시(2019~2022년 종료)
 - (대상자) 복지부의 대상자 유형(모델) 제한 → 지역자율적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맞추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통합적 제공
 - (재원) 선도사업 예산 + 연계사업 재원(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자체 예산

구분	1차 지역	2차 지역
노인	경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시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 부산 진구, 부산 북구, 충북 진천, 충남 청양군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3년~'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예산지정형 12개소)

주요 방향
 ※ 돌봄이 필요하지만 복원적인 욕구를 가진 노인, (고령장애인의 지역 생활 지원)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적 연계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시행기간 '23. 7월~'25.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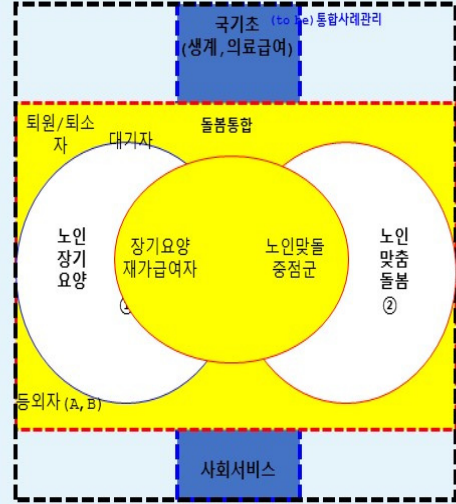
시범사업 지자체 결정 (23. 3월) ※ 시범사업 시행준비(3~6월)
 ※ 시범사업 시행(7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예산지정형 12개소) 기초지정형 35개소

※ 경기 6개소, 인천 2개소 ※ 서울 3개소, 강원 5개소, 제주 1개소
 ※ 경북 3개소, 경남 1개소 ※ 전북 5개소, 전남 4개소, 광주 4개소
 ※ 대구 1개소, 부산 2개소 ※ 충남 2개소, 충북 5개소, 대전 3개소

예산 '25년 기준 71.3억원

※ 기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 관련 시범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또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현황

참고: 통합돌봄 지원 대상(부천시 예시)

구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융합형)	노인의료 통합돌봄 (시범사업)	노인의료 통합돌봄	노인의료 통합돌봄
대상	노인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7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75세 이상 중점)	노인+장애인 (고령장애인 포함)
유형1	장기입원 지역복귀 유형 (지역복귀형)	장기입원 지역복귀 유형 (병원 지역복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800명)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800명)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280명)
유형2	단기입원 지역복귀 유형 (지역복귀형)	단기입원 지역복귀 유형 (지역복귀형)	장기요양 등외 A, B (400명)	장기요양 등외 A, B (400명)	급성기 요양병원 등 퇴원(예정) 환자 (80명)
유형3	75세 도래자 및 고위험군 유형 (예방형)	시설입소자 지역복귀 유형 (시설 지역복귀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60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60명)	노인맞춤서비스 (중점군), 등급판정 대기자, 등급외자 (A, B) (160명)
유형4	지역기반 통합건강 돌봄지원(예방형)	지역기반 통합건강 돌봄지원(예방형)	퇴원(예정) 환자 (140명)	퇴원(예정) 환자 (140명)	고령장애인 (65세 이상) (40명)
유형5	돌봄사각지대 대상자 지원 (예방형)	돌봄사각지대 대상자 지원 (예방형)	기타	노인 맞춤돌봄 및 65~74세 노인 (200명)	65세 이상 및 맞돌 (일반) 등 (240명)

주 : 2025년에는 우선관리대상(유형1~4)를 전체 목표치 800명 중 70%로 설정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또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현황

법 시행 이후 의료-요양 통합돌봄 업무수행절차(*사례관리 표준업무절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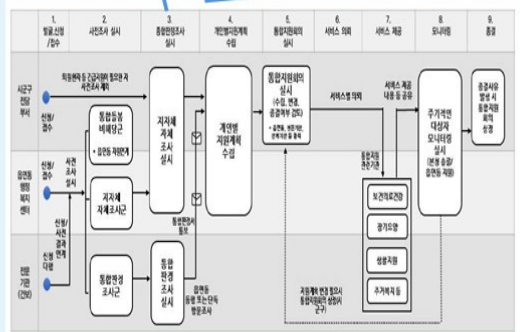
As-is (시범사업)	안내 상담 신청 발굴 신청 의뢰	접수 · 선정	필요도 조사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결정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서비스 종결	
To-be	I. 신청 및 접수	II. 종합판정 조사	III. 종합판정	IV. 서비스 의뢰 및 제공	V. 모니터링	VI. 종결	퇴원 환자 연계

사례관리 표준업무절차	발굴	초기 상담	접수	조사	선정	계획	제공	점검·평가	종결	사후 관리
-------------	----	-------	----	----	----	----	----	-------	----	-------

I. 신청 및 접수	II. 종합판정 조사	III. 종합판정	IV. 서비스 의뢰 및 제공	V. 모니터링	VI. 종결	퇴원 환자 연계
I.1. 신청 및 발굴	II.1. 통합판정 의뢰	III.1. 추가조사	IV.1. 서비스 의뢰	IV.1. 통합지원 모니터링	VI. 종결	
I.2. 사전평가	II.2. 통합판정 심의·판정	III.2. 개인별 지원계획 초안 작성	IV.2. 서비스 제공	IV.2. 개인별 지원계획 변경		
I.3. 평가결과 접수	II.3. 판정결과 접수	III.3. 통합지원회의 개최				
		III.4.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출처: 이정은 외, 돌봄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방안 (2024)

종합판정조사 실시 관련 지자체 자체 조사와 건보 통합판정조사로 이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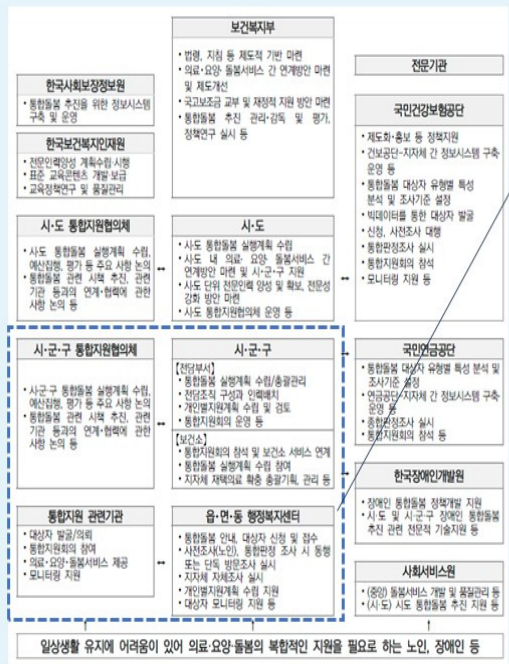


-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표를 활용하여 통합돌봄 대상자 구분
- 해설면에 수록된 사전조사 수행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전조사 실시
 - (통합판정조사군) 치매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7개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의 합산점수가 4점 이상
 - (지자체 자체조사군) 7개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의 합산점수가 2-3점인 경우
 - (통합돌봄 비대상군) 7개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의 합산점수가 1점 이하

출처: 복지부, 통합돌봄 권역별 설명회 자료('25. 10월)

| 지역사회 통합돌봄(또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현황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달체계



- 전담조직 및 인력: 시·군 - 전담 '과', 군 - '팀'
ref.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팀), 통합사례관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발굴, 신청·접수, 조사판정 의뢰, 자체조사 실시, 개인별지원계획 초안 수립, 모니터링 지원
ref.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게이트웨이 기능)
- 시·군·구 통합지원회의: 사례 조정, 지역사회지원의뢰
ref. (시범)지역케어회의, (통합사례관리)통합사례회의
-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ref.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 통합돌봄(또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현황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국가돌봄서비스(11개 기본, 7대 추가, 7개 신규)

구분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11대 기본 서비스	• 병문 진료 (진찰·처방·검사·교육)	• 노인노 병문관리 (간접평가·관리·보건소 자원 연계)	• 방문간호 (감염·투약·호흡관리 등 간호)	• 노인맞춤돌봄 (안전확인, 신체·정신건강 교육, 가사지원)
	• 치매관리·가정관리 (상담·간접·사회관리)	• 노인요양 프로그램 (노년기 등 유관 의료기관, 건강관리)	• 방문요양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 독거노인응급안전 (고장비 응급, 화재·범죄 등 방지 등)
7대 추가 서비스	• 정신건강관리 (중증 정신질환 사례 관리 등)		• 방문목욕 (목욕돌봄, 목욕돌봄)	
	• 만성질환관리 (고혈압·당뇨병 등 케어플랜+주기적 관리)	•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AI·스마트밴드 활용 건강이벤트 행사 등)	• 장기요양 재택의료 (다학제팀 지속 방문 통해 진료·자원 연계)	• 긴급돌봄 (질병·재난상황 등 긴급 대응)
7대 신규 서비스	• 치매전문관리서비스 (주치의를 케어플랜 수립, 비대면 관리+방문진료)	• 복안지킴 (다제불복 용자 약물 점검·상담·치병조정)	• 통합재가 (방문목욕·간호·주요간호 등 통합 제공)	
	• 취약환자 지원 (병원의 환자평가 기준, 시군구 서비스 연계)	• 노인노·노년관리 (노스평가 후 신체·구강·영양·정신 지원)	• 방문요양 (영양관리, 식단조절 등)	
	• 임종케어 (생애주기 케어플랜, 가사·정신지원 등)		• 방문재활 (생활재활서비스)	
	• 통합재택간호 (병문간호, 가정간호, 방문간호관리 통합 제공)		• 방문돌봄 (이동·건강관리 등)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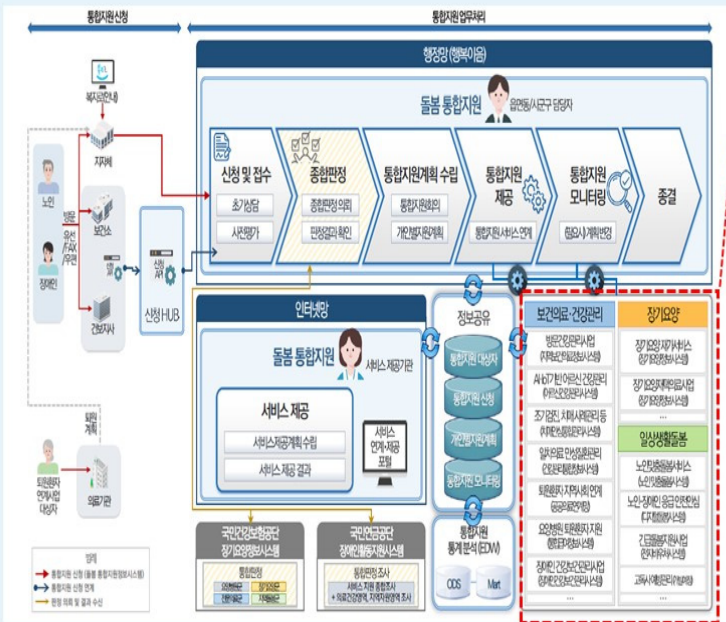
구분	계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방문 재활	건강 관리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요양) 방문 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 보호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동 활동 지원	주거 공간 개선	주거이동	기타
합계 (1인당 평균: 3.97)	21,029 (100)	1,608 (7.6)	1,266 (6.0)	832 (4.0)	1,771 (8.4)	4,281 (20.4)	1,213 (5.8)	342 (1.6)	494 (2.3)	2 (0.0)	940 (4.5)	2,665 (12.7)	1,299 (6.2)	1,308 (6.2)	9 (0.0)	2,999 (14.3)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1인당 평균: 3.97)	12,817 (100)	1,121 (8.7)	712 (5.6)	559 (4.4)	1,014 (7.9)	3,482 (27.2)	988 (7.7)	296 (2.3)	373 (2.9)	2 (0.0)	226 (1.8)	1,339 (10.4)	680 (5.3)	652 (5.1)	3 (0.0)	1,370 (10.7)
등급외·AB 및 맞물출생군 (1인당 평균: 3.67)	2,669 (100)	146 (5.5)	165 (6.2)	90 (3.4)	247 (9.3)	213 (8.0)	65 (2.4)	6 (0.2)	29 (1.1)	0 (0.0)	199 (7.5)	482 (18.1)	176 (6.6)	194 (7.3)	0 (0.0)	657 (24.6)
퇴원환자 (1인당 평균: 4.77)	1,623 (100)	105 (6.5)	149 (9.2)	81 (5.0)	171 (10.5)	151 (9.3)	51 (3.1)	10 (0.6)	30 (1.8)	0 (0.0)	179 (11.0)	159 (9.8)	118 (7.3)	158 (9.7)	1 (0.1)	260 (16.0)
자체유형 및 기타 (1인당 평균: 3.67)	3,920 (100)	236 (6.0)	240 (6.1)	102 (2.6)	339 (8.6)	435 (11.1)	109 (2.8)	30 (0.8)	62 (1.6)	0 (0.0)	336 (8.6)	685 (17.5)	325 (8.3)	304 (7.8)	5 (0.1)	712 (18.2)

* 자료: 2023.07.01. ~ 2024.4.30. 기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주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 일부 재가간호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제공한 점을 감안. 중경군 유형의 장기요양서비스 내용 포함

출처: 유애정 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현황 (’24. 12월)

| 지역사회 통합돌봄(또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현황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26.3.27.)



- ❖ 1단계 연계 대상
- ①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소 방문사업
 - ②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③ 치매관리 (치매상담,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 등), 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
 -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⑦ 긴급돌봄지원사업
 - ⑧ 통합사례관리
 - ⑨ 의료급여사례관리

| 지역사회 통합돌봄(또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현황

'26년 통합돌봄 관련 예산(안)

사업명	세부 과제	과제 내역	예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의료취약지역(183개) 노인, 장애인 지원 확대	1,771억 ('25년 142억)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 지자체 전담공무원 인력 총원(2,400명)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지역특화서비스 확충, 서비스 연계 확대를 위한 2단계 구축	
	방문간호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방문간호의 활성 기반 조성(센터 설치)	
AI 복지·돌봄 혁신	AI 복지상담 및 위기감지 시범사업	시나리오 기반의 AI 초기상담을 정서적 공감 기반 대화형 AI 상담으로 고도화, 감정분석에 따라 위험군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106억
	AI 기술 활용 위기가구 발굴	현행 위기가구발굴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생, 한정된 인력으로 신속히 발굴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조사·결정 등 복지행정 전 과정에 걸쳐 복지신청자에게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는 AI를 도입하고 업무 자동화 지원	
	AI 스마트 홈 기반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AI 스마트홈 기술을 통해 안전, 건강,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제하여 독거노인, 장애 등의 자립생활 지원 실증사업	
	AI 기반 생체신호·표정분석을 활용한 노인 감정·건강상태 예측 및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AI 스마트홈 기술을 통해 안전, 건강,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제하여 독거노인, 장애 등의 자립생활 지원 실증사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복지) * AI-Exprint	스마트홈 AI 기술과 재가돌봄서비스 융합 기술 상용화	AI 스마트홈 기술을 통해 안전·건강·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장애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365억
	AI 기반 간호중심 통합돌봄 및 건강관리서비스 실증사업	간호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 환자 안전성 향상,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중심 건강관리 체계 실현	

| 지역사회 통합돌봄(또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현황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공공-민간 협력

-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공공-민간 간 협업 전제
- 시군구 본청·통합지원창구·통합안내창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의 민관협력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6점으로 긍정적인 인식 부족.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관련한 인식정도 ↓
- 공공-민간 간 협업이 어려운 사유로,
 - (본청) 대상자 관련 개인별 서비스 제공정보 공유상의 어려움
 - (통합지원-안내창구) 공공-민간 담당자 간 원활한 업무소통 부족

구분	담당자별 평균(5점)	구분	담당자별 평균(5점)	
담당자 간 정보교류	본청	3.7	본청	3.6
	읍면동	3.3	읍면동	3.4
	건보지사	4.0	건보지사	3.8
	보건소	3.6	보건소	3.5
	사회복지관	4.0	사회복지관	3.9
	노인복지관	3.7	노인복지관	3.7
민관 협력	지역안심센터	3.3	지역안심센터	3.2
	가사	3.9	가사	3.6
	본청	3.8	본청	3.7
	읍면동	3.5	읍면동	3.4
	건보지사	4.0	건보지사	3.6
	보건소	3.7	보건소	3.5
광역주요 기관	사회복지관	4.1	사회복지관	4.0
	노인복지관	3.7	노인복지관	4.0
	지역안심센터	3.2	지역안심센터	3.2
	가사	3.9	가사	3.6
	본청	3.7	본청	3.7
	읍면동	3.5	읍면동	3.4
지역주요 기관	건보지사	4.0	건보지사	3.4
	보건소	3.6	보건소	3.6
	사회복지관	4.2	사회복지관	3.8
	노인복지관	3.4	노인복지관	3.6
	지역안심센터	3.3	지역안심센터	3.3
	가사	3.6	가사	3.5
구체적인 지원 마련	본청	3.1	본청	3.6
	읍면동	3.2	읍면동	3.4
	건보지사	3.4	건보지사	3.4
	보건소	3.3	보건소	3.6
	사회복지관	3.4	사회복지관	4.0
	노인복지관	3.4	노인복지관	4.0
민관의 운영 활성	지역안심센터	3.0	지역안심센터	3.2
	가사	3.2	가사	3.5
	본청	3.7	본청	3.8
	읍면동	3.4	읍면동	3.5
	건보지사	3.9	건보지사	3.6
	보건소	3.4	보건소	3.8
민관의 운영 활성	사회복지관	4.1	사회복지관	4.5
	노인복지관	3.9	노인복지관	3.9
	지역안심센터	3.3	지역안심센터	3.6
	가사	3.6	가사	4.0
	본청	3.7	본청	3.6
	읍면동	3.4	읍면동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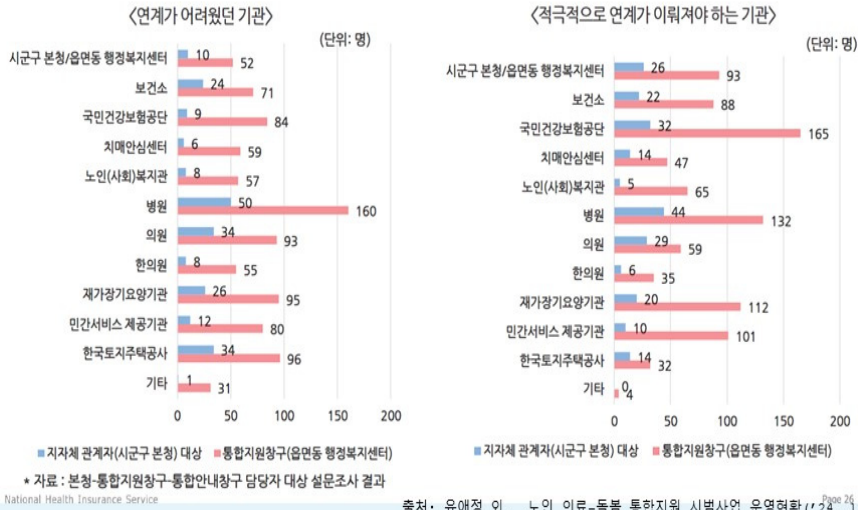
* 자료 : 본청·통합지원창구·통합안내창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출처 : 유애정 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현황('24. 12월)

| 지역사회 통합돌봄(또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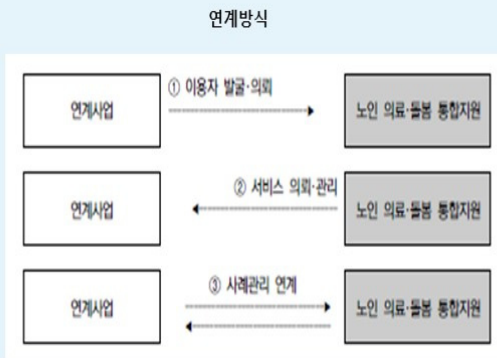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공공-민간 협력

- 시범사업 참여주체(본청-통합지원창구-통합안내창구)의 보건 의료-주거 관련 기관과의 협업 어려움 해소
 - (시군구 본청) 병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민간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과의 적극적 연계 강조



| 지역사회 통합돌봄(또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현황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연계사업별 연계방식(시스템 기반)



연계사업별 연계방식

서비스 유형	연계사업명	① 이용자 발굴·의뢰	② 서비스 의뢰·관리	③ 사례관리 연계
퇴원환자 지원	1)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연계 시범사업	○		○
	2)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		○
	3) 재활의료기관 추가 시범사업	○		○
	4)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		△
	5)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		○
	6)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		○
보건 의료	7) 방문건강관리	○	○	○
	8) 일차의료 방문진료 추가 시범사업	○	○	
	9) AI-IoT기반 노인신 건강관리	○	○	
	10-1. 차폐관리(차폐실, 조기검진, 재활서비스 등)	○	○	
	11) 일차의료 민생질환관리 사업	○	○	△
	12) 정신건강 복지지원(정신건강증진사업)	○	○	○
장기요양	1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	○
	14)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	○	○
	15)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	○	△
일상생활 지원	16) 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	○	○	○
	17)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	○	
	18)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	○	
	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20) 간담돌봄지원사업	○	○	
사례관리	21) 통합사례관리	○		○
	22) 의료급여사례관리	○		○
	10-2. 치매관리(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

주: △의 경우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활동이 아닌 해당 사업의 주요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타 사례관리 연계 사업과는 차이가 있음.

출처: 이정은 외, 돌봄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방안 (2024)

|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과 홀트아동복지회 포지셔닝(positioning)

주제 발표(허수연 교수님)

- ✓ 대상(targeting)
 - 장애아동가족
 - 가족돌봄자
 -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정 등 위기가정
- ✓ 사업(또는 서비스)
 - 가족역량 강화 중심 통합돌봄
 - 위기가정 대상 통합사례관리 모델
 - 준자립 커뮤니티 하우스 사업

⇒ 전적으로 동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혁신 필요

- ✓ 통합돌봄 대상 확대
 - (as is) 노인, 장애인 --- 정신질환 ----- 아동
 - (to be)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
- ✓ 업무프로세스 :
 - (as is) 판정(건보/지자체 이원화), 이후 ISP, 지역사회 자원 의뢰 및 모니터링(지자체 본청/읍면동), 공공/민간 돌봄서비스 간 연계/조정(돌봄지원회의, 돌봄지원협의체)
 - (to be) 통합돌봄 사례관리(사례조정)자원의뢰 시스템
- ✓ 조직/인력 :
 - (as is) 지자체 전담조직(통합돌봄과/팀) 및 전담공무원
 - (to be) 통합돌봄지원단*(사례관리사 포함)
 - * 지자체 직영모델, 복지관 및 민간 위탁모델, 공동생산모델
- ✓ 정보시스템
 - (as is)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 (to be) AI 기반 통합돌봄서비스플랫폼(지역사회자원의뢰플랫폼)

홀트아동복지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혁신의 전략적 파트너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돌봄서비스 제공자(one of them)로 남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

지정토론 2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민간 사회복지와의 협력

조은비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정책팀 주무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민간 사회복지와의 협력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조은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돌봄통합지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반조성

- ✓ 지역계획 수립
-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정책추진

- ✓ 보건의료
- ✓ 건강관리 및 예방 등
- ✓ 장기요양
- ✓ 일상생활돌봄
- ✓ 가족 등 지원

통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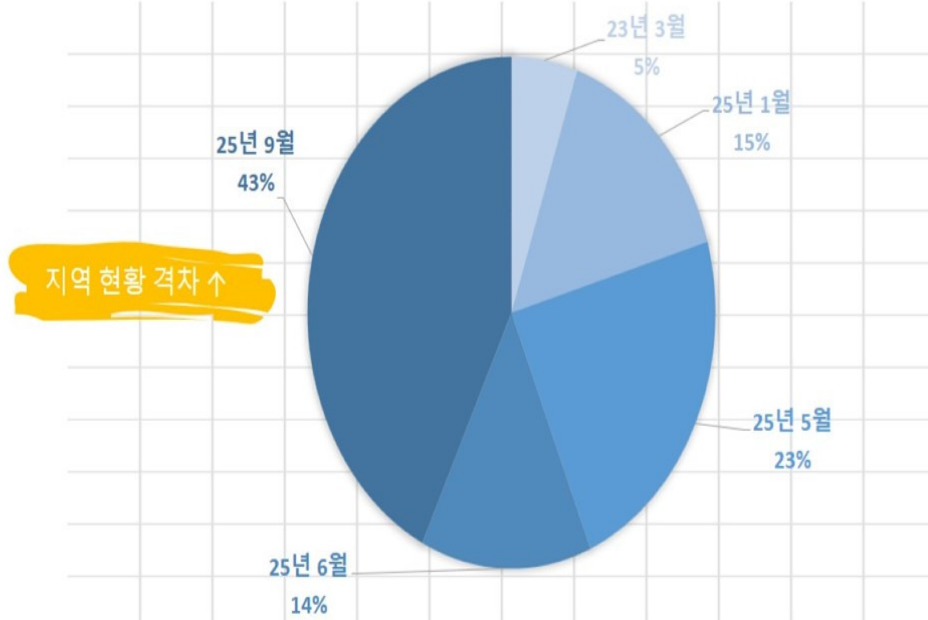
- ✓ 대상자 발굴
- ✓ 신청 및 접수
- ✓ 종합판정
- ✓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 ✓ 서비스 제공
- ✓ 모니터링

돌봄통합지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현황



민간 사회복지와의 협력

지역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

국가 공통서비스 이외에 지역별 특화 서비스 강화

💡 저소득층 중심의 서비스에서 보편적 대상으로 기준 확대



민간 사회복지와의 협력

민관 협력 체계 강화

▶▶▶ 통합지원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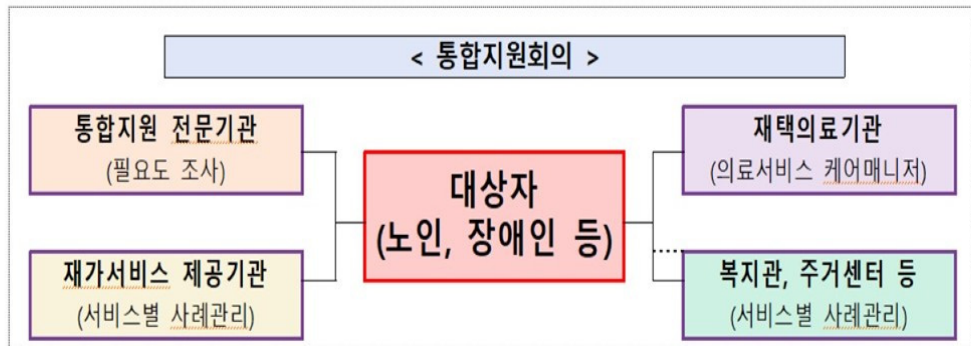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간 사회복지와의 협력

민관 협력 체계 강화

▶▶▶ 통합지원회의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3

돌봄통합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홀트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성원하며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돌봄통합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홀트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성원하며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허수연 교수님의 주제 발표(Gilligan, 1982; Kittay, 2001; Nussbaum, 2002; Held, 2007; 김희강, 2018; 홍찬숙, 2020)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향점으로서의 돌봄에 대한 성찰적 이해를 제시하면서 돌봄이 복지국가를 향한 한국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오늘날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료, 돌봄, 주거, 노동, 문화, 교육, 생활환경 등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다시 혁신적인 사회적 돌봄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돌봄 복지국가의 목적과 방향은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서 연대와 협력,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연계 등의 방식으로 지역 돌봄의 혁신을 주도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때, 주목해야 할 지점은 돌봄은 사람을 통한 실천이라는 것이다. 결국 돌봄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허수연 교수님은 김용득(2016)의 글을 인용하면서 한국사회의 돌봄서비스의 변천 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 현행 이용자 선택 방식의 시장화된 사회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영국의 community care와 영국의 지역기반 아동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의 돌봄통합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허 교수님은 ‘홀트가 선도할 수 있는, 홀트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홀트의 새로운 시그니처가 될 사업에 대한 실용적인 모색’을 시도하였다.

본 토론자는 허수연 교수님의 주제 발표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홀트의 ‘장애아동가족 대상 돌봄통합서비스’에 대한 제시는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이며 탁월한 내용이라고 본다. 돌봄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까지 포괄하는 통합모델은 한국적 상황에서 유효한 접근일 것이다.

본 토론자는 허 교수님의 주제 발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돌봄 중심의 복지국가 지향이라는 맥락에서 홀트의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돌봄통합 관련 사업 개발과 추진을 성원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홀트는 사회적 책무로서의 ‘입양인 및 장애아동과 장애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돌봄을 받는 사람은 온전한 기능을 하는 인간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는 견고하게 만연해 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타인의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돌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발현은 인간 존재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한다. 돌봄은 인간이 능력을 상실해 치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됨이 아닌 자연적 존재의 변화에 대한 순응이기에 그러하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돌봄에 대한 욕구와 정부의 돌봄 정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책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돌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책무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정부 및 사회기관의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 서비스 및 자원의 제공을 포함한다. 사회적 책무는 돌봄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사회적 복지와 공공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홀트는 한국에서 입양인 및 장애아동과 장애인 대상의 돌봄을 오랜 기간 동안 선구적으로 수행해온 대표적인 사회복지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홀트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성찰적 개념화를 통해 돌봄에 대한 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사명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의존이 필수적인 사람들에 대한 돌봄은 생존의 문제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무로서의 돌봄 서비스는 돌봄 노동이 시장에 나와 임금 노동화의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공식 돌봄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다. 한국에서 돌봄이 사회화되는 과정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기에 돌봄의 사회화보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 그 결과,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돌봄 행위의 질은 크게 다뤄지지 못했다. 일자리 수를 확대하는 데에 더욱 주목해 왔던 현실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돌봄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돌봄은 다차원적이다. 즉, 노동이자 태도이며 미덕이다. ‘노동’으로서의 돌봄은 도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상성을 지속하게끔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으로서의 개념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힘을 행사하는 성격을 띤다. ‘태도’로서의 돌봄은 친밀하면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감일 뿐 아니라 타인의 복지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미덕’으로서의 돌봄은 돌봄의 행위로 나타나는 기질이나 특성이다. 미덕은 미덕을 행사하는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타인에게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변화이다.

이와 같은 돌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권 감수성과 존엄한 돌봄에 기초한 돌봄 서비스를 지향하게 된다. 돌봄이 일상적인 생활 장면의 일반적 모습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선순환적으로 다시 돌봄 담론을 인간 권리적 차원에서 풍성하게 한다. 따라서 홀트는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가령 지역 사회 내에서 돌봄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의 돌봄통합 지원센터로서 홀트 사회복지 사업의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

홀트가 선도적으로 감당해 왔던 아동과 청소년 중심의 전통적인 돌봄서비스에서 가족 영역까지 확장한 사회복지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그 결과, 홀트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도적·선구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 돌봄자를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의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돌봄 영역에서 심리적, 정서적 돌봄의 필요와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홀트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 돌봄자들을 위한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내 정신건강 관계기관들과 연계하여 정신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정성을 쏟아야 한다. 더욱이 돌봄 욕구에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예방적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병, 고립 등을 예방하는 역할의 수행도 적극 필요하다.

나아가 홀트는 아동, 청소년 복지와 연결된 문화 여가 공간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홀트의 시설 내에, 또는 지역사회의 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 여가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이와 같은 공간이 통합돌봄의 현장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여가 문화 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하며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아동·청소년 돌봄통합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홀트는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과 가족, 다양한 위기가정의 회복과 재할, 건강 증진 사업의 획기적 개발과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헬스케어와 AI 기술을 홀트 사회복지 사업의 전 영역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홀트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여러 형태의 AI 기술이 적용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홀트의 사회복지 사업으로 이뤄지는 돌봄 영역에서 상호 연계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에 기초한 예측 분석으로 개별화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SK에서 개발한 AI 서비스(careVia)는 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인 어려운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즉시 기록해 행동패턴을 분석하게끔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행동 중재 전문가가 문제행동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는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 10개 발달장애 돌봄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유용성과 가능성을 성과로 산출하였다. 또한 돌봄 로봇의 활용도 주목된다. 돌봄 로봇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신체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식사 보조, 약물 관리,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등을 통해 돌봄 인력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미 일본은 요양기관에서 돌봄 서비스의 지원 도구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한국도 돌봄 로봇을 본격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나아가 AI 기반 상담 및 정서적 지원도 현실이 되고 있다.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챗봇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특히 고립된 노인이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AI를 통한 홀트가 수행하는 돌봄 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개선 도모가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홀트는 지역사회 자원과 AI 기술의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예: 복지관, 지역 병원, 돌봄 서비스 제공자 등)과 AI 기반 서비스(예: 헬스케어 플랫폼, 돌봄 로봇 등)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AI 기술 도입을 위한 홀트 구성원에 대한 AI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하다. 홀트 구성원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는 여전히 삭막하다. 따스한 인정이 그립다. 이럴 때, 격의 없이 편안하게 대화하며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곁에서 지켜 주고, 사심 없이 호의를 베풀며, 다만 행복하기를 기원해주는 친구 말이다.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정말 외롭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찾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진정한 친구 없는

외로운 인생을 역설적으로 되묻는다.

“만 리 길 나서는 길 / 처자를 내맡기며 /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탔던 배 꺼지는 시간 /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불의의 사형장에서 /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 저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 줄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 “저 하나 있으니” 하며 /
빙긔 웃고 눈을 감을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홀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을 찾아주었고,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을 돌봐왔다. 외로운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었고, 친구 같은 따스한 가족을 형성하는 데에 애써왔다. 그 마음 그대로 돌봄통합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힘껏 다가가서 보듬어 안는 꼭 필요한 사회복지실천을 홀트가 잘 수행하길 성원한다.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로서 인정받는 홀트가 되길 바란다.

지정토론 4

장애인 기관에서 바라본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성공을 위한
5가지 체크 포인트

황성진

홀트아동복지회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장애인 기관에서 바라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성공을 위한 5가지 체크 포인트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황성진

2026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들도 이 법의 목적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한사람으로 장애인들이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에 온전하게 포함되고 대상자들에게 성공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점검 하고자 한다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법의 체크 포인트 5개

- 1. 대상자
- 2. 진행절차
- 3. 서비스
- 4. 정보 시스템
- 5. 비용지원 및 부담

1. 대상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의

제2조(정의)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신청·발급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부선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 보건복지부 2024년 통계 장애인구 2,631,356명중 55.3%인 1,455,782명이 65세 이상 95.3% 만성질환유병자/ 활동지원 대상자: 6세 이상~65세 미만

고양시 현황 2025년7월 기준 등록 장애인 42,000여명중 활동지원 대상자 3,416명 이용자수 2,664명 비매칭 752명 활동지원제공인력: 2,927명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 전문가, 서비스 대상자 포함한 장애인 분야와 연계 된 기본계획 수립 필요

2. 신청, 선정등 진행 절차의 사용자 중심 설계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통합 돌봄지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 찾아가는 서비스, 자동지급제의 도입 고려 필요

서비스별 신청 접수기관의 상이함과 신청절차의 복잡함 불편함 해소 방법 필요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사위원회에서 수급자격 판정 이후 수급자격은 1년 : 활동지원과 돌봄의 통합지원서비스 신청 연계해서 설계 필요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해서 운영시 협의체 기능과의 연계성이 낮음

협의체 기능과 분리해서 전담 조직으로 운영 방안 필요

3. 서비스는 편하고 원활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1인 이상의 직원이 사례관리를 위해 배치되어 있고 항시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면 인정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등 담당직원의 역량 강화 중요

서비스 제공 주체 인력 역량강화 필요 : 발달장애인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원활하지 않은 이유중 하나로 의료 종사자 장애인 인식 및 지원 교육 부족

보건의료 / 건강관리 및 예방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주거) / 가족등 지원 연계 제공 이 5대 서비스 각 분야별 서비스 기관도 각각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긴밀한 공조 그리고 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일상생활돌봄을 위한 돌봄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통합된 서비스 채널 필요

4. 장애인 정보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과 연동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운영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기관에 통합지원 대상자를 연계하는 업무(이하 "통합지원 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3.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4.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5.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시스템

6. 그 밖에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등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장애인 통합된 정보 시스템의 부재: 장애인복지관 엔컴(진우정보시스템)의 데이터와 희망이음 데이터 연계 불가능

각기 다른 정보 시스템 연동으로 원활한 정보 공유와 더불어 One Stop 서비스 설계 필요

5. 필요한 자원 지원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별 인력, 예산 상황에 따른 서비스 차이 발생 방지 노력 필요: 경기도돌봄통합지원단 서울통합돌봄지원센터등 전담기구 운영

비용지원 및 부담 대한 장애인 관련 기관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필요

결론

장애인기관의 입장에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 시행의 성공을 위해서 장애인 분야에서 바라본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점검하였다

1. 대상자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신청 선정의 절차의 체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사용자 중심의 설계
2. 서비스 관련 기관들에게 세부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연계 협력 강화 하는 한편
3. 담당 인력의 확보와 역량강화 진행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적소에 제공
4. 통합정보시스템은 각각의 정보 시스템간 연동으로 원활한 정보 공유와 원스탑 서비스 가능
5. 정부, 지자체,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인력, 예산 지원 확보 필요

시행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들이 상기에 제안된 5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이 이루어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원한다

홀트아동복지회 소식 받아보기

홀트아동복지회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후원자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아래 채널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의 주요 소식을 손쉽게 받아보세요.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기념 포럼

통합돌봄 시대,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대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발행인 김정오

편집인 신미숙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전 화 02-331-7000

후 원 02-331-7073~6

•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기념 포럼 •

통합돌봄 시대,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대